

심 사 보 고

1997. 3. 18
교육사회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1997년 3월 6일

○ 회부일자 : 1997년 3월 6일

다. 상정일자 : 제135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(1997. 3.14) 상정
제안설명 및 검토보고, 심의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 (사회복지국장 장상자)

가. 제안이유

○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전면개정 ('96.7.1) 과 충청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 ('96.2.13) 에 따라

- 일부조항을 정비하고, 기금위원회 및 기금운용관의 직명을 변경하고자 함

나. 주요 골자

○ 기부금품모집금지법 개정에 따른 기금관련조항 정비

- 기관단체, 독지가가 기탁한 성금 또는 물품, 기타재산 → 삭제

- 특정사업에 지정된 지원금 또는 성금 → 특정사업에 지정된 지원금

- 충청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으로 인한 직명변경과
도 설치위원회 개선방안에 따른 위원회 직명변경

<조례 제5조> - 위 원 장 : 부 지 사 → 사회복지국장
 - 부 위원장 : 기획관리실장 → 가정복지과장
 - 위 원 : 가정복지국장 → 사회복지과장

<조례 제13조> - 가정복지국장 → 가정복지과장
 - 노인복지계장 → 가정복지계장

3. 검토보고 (교육사회 전문위원 김영만)

충청북도 노인복지기금 설치및운용관리 조례중 개정조례(안)은

- 기부금품모집금지법 개정 ('96.7.1) 에 따라

- 노인복지기금 적립기금중

기관단체, 독지가가 기탁한 성금 또는 물품, 기타재산을 삭제하고

- 노인복지기금 운용기금중

특정사업에 지정된 지원금 또는 성금을 특정사업에 지정된 지원금으로
개정하며

-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('96.2.13) 에 따라

-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 및 기금운용관의 직명을 하향조정하는 것으로

타당하다고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 의결 (참석 5명, 찬성 5명)

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9. 첨부서류

- 충청북도 노인복지기금 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(안)
- 신구조문 대비표